

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(안)

- 검토 보고 -

제안이유

-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부지(토지,건물)와 덕산면사무소의 주차장부지에 대한 취득과
- 대흥면 손지리 120-3의 토지에 대하여 실경작자에게 처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

주요골자

- 재산취득
 - 토지 : •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부지(1건. 1,200 m^2 . 350,000천원)
• 덕산면사무소 주차장부지(2건. 349 m^2 . 130,000천원)
 - 건물 : • 노인 종합복지회관 (1건. 1,200 m^2 . 1,100,000천원)
- 재산처분
 - 토지 : • 대흥면 손지리 120-3(1건. 2,765 m^2 . 12,719천원)

관련법령

-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
- 지방재정법 제77조
-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

□ 검토의견

-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종합 복지회관 건립부지의 취득과 실경작자가 희망하는 토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
-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공사비 7억 8,491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부족분 6억 6,509만원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사업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확보 대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
- 위치선정시에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니만큼 교통 및 주변환경등을 고려하여 건립하여야 하고 현재 일부 시군에서 운영중인 노인복지회관의 실태를 파악하여 운영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며
- 덕산면사무소 주차장 부지확보는 민원인 주차난 해소와 관광지로서의 이미지 개선 및 환경개선에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타 읍면에도 주차장 협소로 인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는 지역은 없는지 살펴 볼 필요성도 있으며
- 실경작자가 희망하는 대흥면 손지리 토지(2,765㎡)의 처분은 절차상 문제점 등을 검토해 매각하여야 하며 군재정 세입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